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2000. 10. 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아스콘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0공동0504)	경기아스콘산업(주), (주)덕천산업, (주)삼호레미콘, (주)석천레미콘, (주)신성아스콘, (주)신흥, 청산아스콘(주), 태창아스콘(주), 태형아스콘(주), 원우아스콘(주)는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민수용 아스콘을 판매함에 있어서 서로간의 경쟁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1999. 11월경부터 아스콘판매회사를 통해 공동으로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친 후 2000. 2월 모임에서 태형아스콘(주)의 공장장 등이 설립할 예정인 아스콘판매회사 한국건자재(주)를 통하여 민수아스콘을 공동으로 판매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2000. 2. 17. 동 판매회사의 설립 후 2. 20에서 2. 25까지 물품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물품공급계약서에 자신들이 판매회사와 협의없이 수요처와 직접 거래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동 판매회사에 제출하였으며,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대한아스콘(주)도 원우아스콘(주)로부터 아스콘 제조·판매부문을 양도받은 후 동 판매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아스콘을 판매하는 등 공동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경기도 북부지역 민수아스콘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4호 위반	<p>◎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품공급계약을 각각 파기토록 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단위 : 천원) 경기아스콘산업(주) : 2,000 대한아스콘(주) : 4,800 (주)덕천산업 : 6,400 (주)삼호레미콘 : 2,500 (주)석천레미콘 : 3,900 (주)신성아스콘 : 2,600 (주)신흥 : 2,000 청산아스콘(주) : 2,200 태창아스콘(주) : 3,100 태형아스콘(주) : 3,400</p>

2000. 10. 7.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파스퇴르유업(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광고0777)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는 2000. 5. 22.부터 6. 21.까지의 기간중 3개의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자신의 분유제품인 '골든뉴로히트'를 광고하면서 특정회사의 바꾸니까 참 좋다는 광고내용을 인용, "가장 고집세고 가장 거짓말 하지 않는 회사의 유아식이야말로 가장 믿을 수 있으니까.."라고 표시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자기 회사만이 가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장 거짓말을 하지 않고 타사업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4호 위반	공표토록 함
(주)한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광고0548)	주식회사 한올은 2000년 4월호 여성지에 “커피관장다이어트”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커피관장다이어트를 하루 10분씩 실시하면 한달에 6~7kg 감량할 수 있다”, “뛰어난 지방분해 효과”, “요요현상 걱정없는 자연요법”, “피부미용에 질병예방 효과”라고 표시하여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주)넥슨의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등 온라인게임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2000약제0996)	주식회사 넥슨은 자신이 사용중인 인터넷가페계정신청이용약관서, 개인정액사용자이용약관서, 어둠의전설게임이용약관, 바람의나라게임이용약관에 어떠한 사유 발생시에도 자신은 금전적인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자신이 정한 기간을 경과하거나 서비스 사용기간중 사용자의 환불요청시 환불할 수 없으며, 아이디 이용에 관하여 게임 안에서 편지를 보내는 방법 외에는 복구신청을 받지 않으며, 약정이나 조건들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규정하였고, 운영규칙 위반시 아이디를 구속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약관법 제17조 위반	◎ 해당 이용약관의 조항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함

2000. 10. 14.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주)롯데쇼핑(롯데백화점대전점)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전사0744)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봄정기바겐세일중에 단계별로 특별기획행사를 실시한다는 판촉계획에 따라 봄세일에 참여하지 않는 4개 준보석브랜드를 ‘노세일 브랜드’로 분류하여 「신혼예물보석전」을 4. 17.부터 4. 23.까지 실시하면서 동 보석전의 소비자현상경품행사 비용으로 경품비 2,240,000원과 전단지제작비 5,437,000원 등 총 7,677,000원의 행사비를 이들 4개 참여업체에게 부담시켰으며, 「패션구두·핸드백전」을 4. 12.부터 4. 16.까지	◎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점포임차인 및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고, 동 사실을 1개 대전지방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p>실시하면서 동 행사에 참여한 12개 업체로 하여금 소비자현상경품으로 핸드백 등 총 30점의 상품을 자신에게 기증토록 하여 총 1,085,000원의 경품비용을 부담시켰고, 「여름예감 패션상품전」을 5. 12.부터 5. 16.까지 실시하면서 동 행사에 참여한 17개 업체에게 총 40점의 상품을 기증하게 하여 총 2,940,000원의 경품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자신의 판촉행사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경품비와 광고비를 부당하게 전가하였으며, 봄세일에 참여하지 않는 노세일 브랜드에 대하여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할 경우 10% 할인판매를 실시해 오던 중, 4. 3.부터 노세일 브랜드와 세일중인 브랜드에 대해서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할 경우 일방적으로 추가 10% 할인판매토록 하였고, 5. 15.부터 5. 28.까지 유명브랜드 바겐세일을 실시하면서 세일 3일 후부터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할 경우 노세일 브랜드에 대해서는 10~15%, 세일중인 브랜드에 대해서는 10%의 추가할인을 일방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등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자에게 행사 참여를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또한, 4. 14.부터 4. 23.까지 구매금액에 따라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전관 소비자 사은행사에서 특별행사로 보석전과 명품골프박람회를 실시하면서 전관 소비자 사은행사와 별도로 특별행사장에서도 소비자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지에 “중복증정 불가” 취지의 문구를 현저히 작은 글씨로 삽입하여 광고하였으며, 3. 27.부터 4. 6.까지 롯데백화점 전국 점포에서 신사정장대전의 이벤트행사로 전국 점포에서 응모한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비자현상경품을 제공함에도 대전점 롯데카드 고객들에게 발송한 D.M 광고물에 “중부권 최대 제1회 신사정장대전”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점포에서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한다는 사실을 명기하지 않은 채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광고하는 등 사실은 없거나 축소하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2호 위반</p>	<p>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8,700만원</p>

2000. 10. 1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대규모기업집단 「쌍용」 소속 쌍용건설(주) 및 쌍용양회공업(주)의 기존 채무보증 해소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0기업1040, 2000기업1042)</p>	<p>쌍용건설(주)는 2000. 3. 31.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쌍용엔지니어링(주)에 대한 기존 채무보증 805백만원을 해소하여야 하나 피보증회사인 쌍용엔지니어링(주)의 매각으로 인한 계열분리 진행을 사유로 동사에 대한 채무보증 해소시한을 2000. 7. 31.까지 연장받았음에도 연장금액 중 173백만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며, 쌍용양회공업(주)는 2000. 3. 31.까지 국내 계열회사 오주개발(주), 쌍용자원개발(주), 쌍용캐피탈(주)에 대한 기존 채무보증 125,535백만원을 해소하여야 하나 피보증사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채무를 해소할 예정임을 사유로 해소시한을 2000. 7. 31.까지 연장받았음에도 연장금액 중 112,757백만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0조의3제1항 위반</p>	<p>◎ 채무보증을 2001. 3. 31.까지 각각 해소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단위 : 천원) 쌍용건설(주) : 1,800 쌍용양회공업(주) : 220,800</p>
<p>심천시중흥통신주식유한회사의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0기결0706)</p>	<p>심천시중흥통신주식유한회사는 2000. 2. 15. 이동전화 단말기모델 개발업에 종사하는 (주)퓨처텔의 주식 33,507주(24.79%)를 취득하면서 법정신고기한인 30일을 경과하여 2000. 5. 24. 기업결합신고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2조제4항 위반</p>	<p>◎ 과태료 납부 : 3,000천원</p>

2000. 10. 2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사)한국제약협회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건 (2000경축0849)</p>	<p>사단법인 한국제약협회는 의료보험용 의약품의 가격제도가 1999. 11. 15. '고시가 상환제'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로 변경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회원사인 제약업체들이 생산하는 의약품의 기준약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회원사인 제약회사들에게 의약품 도매상이 임의로 저가 입찰하여 낙찰받을 경우 저가 입찰한 도매상에게 당해 품목의 공급을 중단하도록 요청함과 동시에 자신의 조직 내의 각종 위원회 및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국·공립병원에 저가로 입찰하여 낙찰받은 도매상 및 저가 낙찰품목을 공급한 제약업체를 파악하여 해당 제약회사에게 도매상이 기준약가를 준수하게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회원사에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접수센터</p>	<p>◎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8.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하고, 동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31,000천원</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활성화 및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유통관리 철저 요청' 이란 제목의 문서를 통해 기준약가를 유지하게 하는 등 자신의 구성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4호 위반	

2000. 10. 2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부산광역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0부사0590)	부산광역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은 LPG 판매가격 표시와 무관한 일반 소매품에 대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이 1999. 6. 18.자로 개정되자 LPG 판매가격의 표시를 안내·홍보한다는 명분으로 1999. 6. 30. 이사장, 이사 및 부산광역시 각 구·군 지회장 등 17인이 참석한 '1999년도 제6차 연석회의' 를 개최하여 이사장이 판매규격별로 특정가격을 표시·작성한 "액화석유가스판매가격" 을 각 지회장을 통하여 소속 조합원에게 통지하기로 결정, 이를 배포하였고, 산업자원부가 1999. 10. 1.부터 액화석유가스의 가격변동을 고시하였을 때에도 판매가격표를 작성하여 각 지회장을 통해 소속 조합원에게 배포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부산광역시 지역의 액화석유가스 소매업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	<p>◎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부산광역시지역 1개 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8,100천원</p>

2000. 10. 28.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2000약제110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자신이 사용중인 공무원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료로 임대보증금과 특별수선충당금을 자신의 고지에 의거 임차인이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며, 이행의 최고 등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이외의 연고권 주장이나 질	◎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조항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함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권 등 어떠한 목적의 권리도 설정할 수 없으며, 임차한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 등 일체의 비용상환 청구를 하지 않고는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주택 임대차등기 절차에 대한 청구권을 배제하였으며, 계약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자신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에 의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임을 규정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약관법 제17조 위반	

2000. 10. 31.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처
한국근해수송협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0단체0119)	한국근해수송협회는 한일항로간 풀링시스템에 관한 협약인 '한국근해수송협회 규약' 제9조에 회원의 규약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으로 하여금 일천만원권 당좌수표 5장과 금액공란 당좌수표 2장을 기탁하도록 하고, 탈퇴 등으로 회원자격이 종료될 경우에도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법으로 회원의 가입·탈퇴를 제한하여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2호 위반	◎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부산권빙과업협회의 거래거절강요행위에 대한 건 (2000부사0683)	부산권빙과업협회는 구성사업자 25명이 참석한 2000년 1/4분기 모임에서 "무자료 덩핑판매업자를 근절하고자 이들에게 제품 공급 및 쇼케이스 지원을 하는 회원에게는 위약금을 물리자"고 결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30명의 구성사업자로부터 500~1,000만원짜리 어음 또는 속칭 문방구어음을 받아 보관하였으며, 비구성사업자 중 4명이 빙과제조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소매점에게 제품을 공급하자, 2000. 5. 24. 구성사업자들과 협의를 한 후 빙과제조 4사와 부산지역 5개 지점 및 직영영업소와 구성사업자인 대리점에게 "지점과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세무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하는 무자료 덩핑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품 공급 및 쇼케이스	◎ 거래거절강요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후 지체없이 결의사항을 자신의 대의기관을 통하여 파기하고, 구성사업자로부터 징구한 어음을 해당 구성사업자들에게 반환토록 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고, 동 사실을 부산·김해·양산지역을 발행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지원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협의 회나 각 사 지점에 통보해 줄 것과 비조직의 판매활동을 제지하여 협의회의 생존시장을 지켜나가는데 협조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하였으며, 2000. 5. 31. (주)빙그레 부산지점 등 빙과제조사 지점 및 직영 영업소와 회원 대리점에게 전화를 통해 자신이 거래중지대상 사업자로 정한 비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제품 공급 및 쇼케이스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제4호 위반</p>	<p>대상지역으로 하는 1개 지방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롯데쇼핑(주)외 2개 백화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건 (2000유거1078)</p>	<p>롯데쇼핑(주)와 (주)현대백화점과 (주)신세계백화점은 국내 백화점업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위 내지 3위인 사업자들로서 자신들에게 상품을 납품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대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1999. 9. 1.부터 2000. 5. 31.까지 자신들의 각 매장에서 실시하는 특별판매행사의 신문광고비용을 조달함에 있어 동 행사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납품업자들로 하여금 특별한 기준도 없이 관행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케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납품업자들에게 각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p>현대종합기획의 재판매가 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2000경축0806)</p>	<p>현대종합기획은 2000. 2. 15. 자신의 거래처인 판매대리점 27개소에 "할인점 인테리어시트 최저 판매가격 공고"라는 문서를 통해 "할인점의 최저판매가를 확정, 통보하니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제품공급의 중단과 함께 판매대리점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을 통보하면서 "현대인테리어시트 할인점 최저 판매가"라는 가격표를 함께 보냈으며, 자신의 판매대리점인 (주)아람기획과 거래하는 할인점인 한국까르푸(주)에서 4. 27.부터 5. 5.까지 '까르푸 가정의 달 특선' 행사의 일환으로 자신이 생산·판매하는 '디즈니띠백지' 제품을 최저 판매가인 6,300원보다 낮은 5,900원에 판매하려 하자, 4. 27.을 전후하여 (주)아람기획에게 한국까르푸(주)로 하여금 동 행사 제품의 판매계획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게 하였으나 동 행사가 계획대로 시행되자, 5. 5. '할인점 인테리어시트 최저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한 (주)아람기획에게 제품공급을 중단하고 5. 25. 판매대리점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 위반</p>	<p>◎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하고,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판매대리점에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